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5일, 박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의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군사

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개정안은 현행 실태조사 실시 사항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 중에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국회가 정례적으로 명확히 보고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포함 사항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함으로써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사유 및 추진 현황 등을 국회가 정례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붙임]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
정안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행 실태조사 실시 사항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국방·군사시설 중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국회가 정례적으로 명확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u><신설></u>	<u>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u>	<u><삭제></u>

<신 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지방자치
단체의 건의에 의
한 군부대 이전 절차)
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
전을 희망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방부장관
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부
대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삭 제>

을 군부대 이전후
보지(이하 “이전후
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
한 이전후보지 중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부지를 선정하
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
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계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 지

	<u>연 등으로 인하여</u> <u>제1항에 따른 이전</u> <u>건의일로부터 1년</u> <u>이내에</u> <u>이전부지</u> <u>선정이 이루어지지</u> <u>아니한 경우 국무</u> <u>총리에게</u> <u>이전부지</u> <u>선정을 위한 이견</u> <u>조정을 요청할 수</u> <u>있다.</u> ⑥ <u>국무조정실에</u> <u>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제5</u> <u>항에 따른 이견조</u> <u>정 업무를 담당하</u> <u>는 기구를 둘 수</u> <u>있다.</u>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생략)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 음)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② ----- ----- ----- -----.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 음)	1. ~ 3.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4. 이전 사유 및 추 진 경과 등 국방 · 군사시설의 이 전 현황에 관한 사항</u>	4.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벌칙 적용에 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제4항에 따 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 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u>	<u><삭 제></u>

법률 제 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생략)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u> <u>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u> <u>에 관한 사항</u>
<u>4.</u> (생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